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청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92 발의연월일: 2020. 1. 29.

발 의 자:정청래·권인숙·김철민

박찬대 · 오영환 · 이규민

이수진 • 이용빈 • 이탄희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사학법인의 이사장, 소속 학교의 장, 보직 교수 등 교 원 외에 직원이 사학 비리의 주체가 되거나 조력하는 경우도 많아 문 제가 되고 있음.

또한, 사학법인의 인사·채용비리는 사학법인의 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한 비리로서 설립자나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 및 교직원들에 의한 학교 경영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
이에,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

개하여 인사·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 이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 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0조의4 신설).
- 나.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0조의5 신설).
- 다.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 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0조의 6 신설).
- 라.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 도록 함(안 제72조의3 신설).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4부터 제7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0조의4(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)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 당 직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 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 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70조의5(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)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4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한다.
- 제70조의6(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)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1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
 - 2.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
 - 3.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
 - 4. 이 법,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.

제5장에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의3(임원 등과의 친족 교직원 수 공개)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원"을 "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70조의4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5. 제7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70조의6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

제74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0조의4(사무직원에 대한 징계
	요구) ① 제70조의2에 따라 임
	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
	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
	때에는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는
	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
	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
	<u>을 하여야 한다.</u>
	②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권
	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
	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
	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
	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
	요구하여야 한다.
	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
	도 불구하고 제70조에 따른 조
	사결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직
	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
	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
	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
	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
	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
	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
	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

<신 설>

<신 설>

야 한다.

제70조의5(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) ① 사립학교 사무 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4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 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 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0조의6(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)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하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

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

 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

 당한 일을 하였을 때
- 2.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의 행위에적극 가담한 경우
- 3.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경우
- 4. 이 법, 이 법에 따른 명령 또 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 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 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한 경우에만 한다.
- 제72조의3(임원 등과의 친족 교직원 수 공개)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

<u><신 설></u>

제74조(과태료) ① 사립학교 <u>교원</u> 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학교법인의 이사장, 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)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9. (생 략) <신 설>

	공개하여야 한다.	
제]74조(과태료) ①	· <u>교원</u>
	또는 제70조의2에 따리	<u> 임명된</u>
	<u>사무직원</u>	
	1 0 /뉟케키 키.ዕ\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70조의4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5. 제7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6. 제70조의6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

②	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제72조의3에 따른 공개를

	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
	<u>개한 경우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